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연금보험 적립형(1종)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연금보험 거치형(2종)

2. 보험의 세목

구 분	생존연금 지급형태
적립형 (1종)	종신연금(정액형, 체증형(5%,10%), 소득보장형(50%,100%))
거치형 (2종)	종신연금(정액형, 체증형(5%,10%), 소득보장형(50%,100%))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3.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구분		적립형(1종)	거치형(2종)
연금지급개시나이(Y)		45세 ~ 70세	
보험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Y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 Y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Y세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 Y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만15세 ~ [Y-납입기간-7]세	만15세 ~ [Y-7]세

#### 4.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구분	적립형(1종)	거치형(2종)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 ~ [ Y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 7] 년납 (1년 단위)	일시납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주)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적립형(1종)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다만, 제1회보험료는 기본보험료만으로 한다.

(1) 기본보험료 : 1계좌 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추가납입보험료

① 계약일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시점 만 7년 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한다.

②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매회 10만원 이상)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text{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 200\% \times \text{가입경과년수}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14. 보험료 납입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다.

## 나. 거치형(2종)

계약시점에서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로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7.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특약보험료 제외)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약관 제4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8.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가’ 및 ‘11.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의 ‘가’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감액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직전(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8.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 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나.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 9.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한다)로 적립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은 사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5)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적립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은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유지계약의 최저연금적립금기준준비금의 합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일반계정에서 부담한다.
- (6) ‘(4)’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 및 ‘(5)’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은 계약소멸, 해지[부활(효력회복)가능기간이 경과한 계약] 등 감소계약이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으로 처리한다.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적용한다.

##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 ①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② 혼합1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③ 혼합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2) ‘(1)’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3)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varepsilon_1$ )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varepsilon_2$ )에 관한 사항

-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특별계정 운용보수( $\varepsilon_1$ )	특별계정 수탁보수( $\varepsilon_2$ )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26301370%)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9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0684932%)
혼합1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7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208493151%)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9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0684932%)
혼합2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6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81095890%)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9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0684932%)

- (2) 특별계정이 다른 간접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이외에 해당 간접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 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다만,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3) 펀드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
- ② 회사는 ‘①’ 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다만, 이전하는 펀드 적립금은 10만원 이상에 한한다.
- ③ 회사는 ‘①’ 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펀드 적립금의 0.1%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②’ 의 현금이전시 공제한다. 다만, 수수료 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 ④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 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2) ‘(1)’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비용, 보수, 회계감사비용 및 채권평가비용 등을 펀드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아.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 자.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①’ 내지 ‘②’ 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 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 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10.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1.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 가. 연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연금액 계산시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지급금)을 기준으로 ‘나’ 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나. 연금액 계산시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3)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 A.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sub>12</sub>**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sub>0</sub>**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B.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blacksquare \text{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4) ‘(3)’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3)’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5)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6)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7)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 12.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납입후유지비 제외)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7.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① 연금지급개시일에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②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금이 회사가 보증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을 사용하고,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클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 중 해당 계약의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 ③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 중 해당 계약의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의한 자금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13.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4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회당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 나. 적립금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 다. 인출금액은 인출 후 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다.
- 라. ‘가’ 내지 ‘다’ 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7.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 따라 계산한다.
- 바. 적립형(1종)에서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 14. 보험료 납입중지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를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계약에 한하며, 특약의 보험료는 완납되어야 한다.
- 나. 보험료 납입 중지 후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유지비는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 15.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 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적립금과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자연식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부활(효력회복)일부부터 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다. ‘나’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을,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 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제2영업일」,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 16.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적립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 계정에 적립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10.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의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다

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라. 회사는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납입연체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대출대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바.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17. 기타

###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회 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다.

㉡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다.

③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다.

나.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 및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1)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라.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8)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9)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 마.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적립형(1종) : 월납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Min{납입기간, 10}

(2) 거치형(2종) : 일시납보험료

#### 바. 지급여력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에 포함한다.

#### 사.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1) 거치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2)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3)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자.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보험계약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